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판 결

사 건 2023고단148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화인건설 주식회사 (000000-0000000)  
소재지 천안시 000 0000 00, 0000  
대표자 사내이사 000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000  
판 결 선 고 2024. 1. 23.

### 주 문

화인건설 주식회사는 무죄.

### 이 유

#### 무죄 부분(화인건설 주식회사)

##### 1. 공소사실의 요지

##### 가.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0000 주식회사는 아산시 0000 00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 주식회사 00000로부터 아산시 000에서 진행된 '00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를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을 000부터 000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는 천안시 000 0000 00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주, 위 0000 주식회사로부터 '00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기타공사' 중 오수관로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포함한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76,000,000원, 공사기간을 2022. 8. 12.부터 2023. 2. 10.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고, 피고인 000은 위 화인건설 주식회사의 대표 겸 현장소장이다.

피해자 000(남, 00세)은 위 화인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 나. 범죄사실

### 1) 피고인 000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0000000

#### 가)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흩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층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흩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의 경우 1:1 ~ 1:1.5, 건지의 경우 1:0.5 ~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흩막

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000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의 대표 겸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인의 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22. 8.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및 굴착기 운전기사 000로 하여금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해당 작업장의 지형 등을 고려한 사전조사 실시나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굴착면의 기울기에 관한 기준을 무시하고 수직으로 굴착하게 하였으며, 굴착 폭 약 1.5m, 깊이 약 2.1m로 좁고 깊게 수직으로 굴착하여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9:43경 피해자가 굴착면 하부에서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굴착법면이 더 이상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현장에서 산소결핍 및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000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0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 2. 피고인들의 변소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 3. 판단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가 0000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000과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각각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와 0000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의 범위가 “기계설비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오수관로가 기계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계설비공사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② 000가 이 사건 공사를 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여 사고 전날 피고인 000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 한명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000이 일용노동자로 고용해 온 피해자로 하여금 000가 지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000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000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공사와 관련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000, 화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_\_\_\_\_